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07.08.23.
개정 2017.02.22.
개정 2018.10.30.
개정 2025.07.21.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장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며, 이 규정에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7. 2. 22.>

제2조의2(제척 및 회피)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이사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이사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이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전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경우
- [본조신설 2025. 7. 21.]

제3조(간사) 시장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의 직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이사회 운영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제4조 삭제 <2025. 7. 21.>

제5조(관계인의 의견진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제6조(제안 설명 등) 의장은 제안 안전에 대하여 간사, 관련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제7조 삭제 <2018. 10. 30.>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3인 이상, 그리고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개정 2025. 7. 21.>

② 회의록과 부의 안건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며,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한다. <신설 2025. 7. 21.>

제9조(운영일지) 간사는 이사회의 차수, 성원결과, 안전번호별 의결 결과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의 이사회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제10조(수당 등 지급)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기타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1.]

부 칙 <2017.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차 이사회 회의록

1. 구 분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제 차 이사회

2. 회의일시 :

3. 회의장소 :

4. 참석현황

재적 : 명, 참석 : 명, 위임 : 명, 불참 : 명

5. 부의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6. 진행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7. 서명날인

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제 8 조(회의록)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의장	이사	이사	이사	감사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이사회 운영일지

1. 구분 및 차수 : 제 차 [정기·임시] 이사회

2.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 장 소 :

3. 성원결과

○ 참석이사 :

○ 위 임 장 :

○ 불참이사 :

4. 부의사항

안건번호	안 건 명	의 결 결 과	비 고
제 호			
제 호			